표준하체인수특약







2212152200000008852 표준하체인수특약 1701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표준하체인수에 관한 사항

제3조 표준하체인수의 종류 및 세부내용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특약의 성립

제5조 특약의 소멸

제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8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9조 특약의 해지

제10조 해약환급금

제6관 기타사항

제11조 "해당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부표1] 재해분류표

표준하체인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또는 특약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해 당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해당계약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 자는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인(3인, 多인) 보장보험에서의 피보험자

- 이 특약을 2인(3인, 多인)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다. 표준체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피보험자 를 말하며, 표준체에 대해서는 위험률을 할인 또는 할증하지 않고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라. 표준하체 : 위험도가 일반 위험률보다 높아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는 계약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부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2212152200000008853 표준하체인수특약 1703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표준하체인수에 관한 사항

제3조 표준하체인수의 종류 및 세부내용

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이 특약에서 부가할 수 있는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와 표준체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보장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로, 이를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비싸질 수)있습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삭감기간 및 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삭감기간이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계단식 보험금감액법

カコレフト	기준	삭감 기간별 보험금 지급비율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100%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100%	100%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100%	100%	100%	80%	60%
4년이상 5년미만		100%	100%	100%	100%	80%
5년이상		100%	100%	100%	100%	100%

나. 평준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전 삭감기간동안 50%이상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동일한 보험금지급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계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라 합니다. 즉, 어떤 위험도를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이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 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심사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계약심사기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212152200000008854 표준하체인수특약 1705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해당계약"에 부가된 계약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해당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제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한 "해당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종목의 변경
 - 2.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3.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 재원으로 하여 보험기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연장정기보험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 재원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기간을 단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이 특약도 동일 내용으로 감액하여 드립니다. 이 때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212152200000008855 표준하체인수특약 1707

-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③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제8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에서 정하는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9조 특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과 함께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을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부가하여 "해당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 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해당계약" 가입이 가능 한 상태가 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③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0조(해약환급금)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10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제3조(표준하체인수의 종류 및 세부내용)에서 정한 계약조건 중 보험금감액법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나이가산법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 부가로 할증된 표준체 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1조 "해당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212152200000008856 표준하체인수특약 1709

부표1

재해분류표



별첨2 [표 1] 참조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통화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의 청구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성립

제8조 특약의 무효

제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11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계약자의 해지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관 기타사항

제13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부표1] 재해분류표

※ "원화형" 및 "달러형"은 주계약의 기준통화를 따릅니다.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 자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피보험자를 말 합니다.
 - 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

제2조의2 통화의 정의

보험 종 목	통화의 정의
원화형	보험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그 단위는 '원'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달러형	보험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그 단위는 '달러'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에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2212152200000008858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171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서 지급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부표1>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은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서 지급할 사망보험금의 50%이내에서 지급하며, 다른 계약을 합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3,000만원(달러형의 경우 30,000달러)을 최고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약에 따른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차후 남은 사망보험금 지급시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에서 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뚜렷한 사기의사 등에 의하여 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 이후 "주계약 및 사망 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더라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하고 남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특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1. 보험수익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3.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다만, 보험수익자 중 1인 이상이 실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여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보험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금에서 아직 반환받지 못한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11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 개시)를 준용합니다.

제5관 계약자의 해지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3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규정을 따릅니다.

1717

부표1

재해분류표



별첨2 [표 1] 참조

선지급서비스특약







2212152200000008861 선지급서비스특약 1719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통화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제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11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제12조 적용대상

제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제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6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제18조 다른 특약의 취급

제19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212152200000008862 선지급서비스특약 1721

선지급서비스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주계약 또는 특약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미리 지급하여 피보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1.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2.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보험수익자 :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와 동일인으로 합니다.
- 3.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4.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제2조의2 통화의 정의

보험종목	통화의 정의
원화형	보험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그 단위는 '원'이라합니다)로 합니다.
달러형	보험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그 단위는 '달러'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에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선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 보험금에 해당하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일에 감액처리 하며,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선지급된 이후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더라도 그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선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거나 사망보험 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남은 생존기간에 해당하는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이자 및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며,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도 뺀금액을 지급합니다.

2212152200000008863 선지급서비스특약 1723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8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보험금 이 청구된 날을 기준으로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 또는 제16조(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서 정의한 대리청구인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피보험자 또는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특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212152200000008864 선지급서비스특약 1725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다만, 제8조(특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1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 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 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제12조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청구인은 제14조(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제15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2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 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①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2212152200000008865 선지급서비스특약 1727

증)

-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대리청구인이 제15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2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 ①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 ②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18조(다른 특약의 취급)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계약의 소멸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다른 특약의 취급

- ① 이 특약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전부가 선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선지급 사망보험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신청(다만,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로 합니다)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⑦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2212152200000008866 선지급서비스특약 1729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5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3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제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제7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제9조 특약의 소멸

제10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기타사항

제11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4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청구인은 제5조(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제6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3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제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①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 본
 -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대리청구인이 제6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1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 관 목 차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2조 제출서류

제3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4조 전환해지

제5조 준용규정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등

-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이하 "장애인전용보험"이라 합니다.)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 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12(제1호의 경우에는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4(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 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삭제
 -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 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①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현

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한 경우
 - 3.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 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별첨1> 참조)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별첨1> 참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이 특약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납입영수증 표시에 관한 사항 I

2022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2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22년 1월 15일 ~ 2022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2년 6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2년도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해당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해당년도에 제4조(전환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납입영수증 표시에 관한 사항Ⅱ

2022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2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을 때

- 1) 2022년 12월 1일에 전환을 해지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해당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2) 2023년 6월 1일에 전환을 해지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3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3)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에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2022년 12월 1일까지인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2022년 6월 1일 ~ 2022년 12월 1일) 납입된 보험

- 료는 해당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 됩니다. 그러나,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지난 후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 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⑤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또는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한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전환해지

계약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이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면책(보장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제3조 면책(보장제한) 조건의 내용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특약의 성립

제5조 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7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기타사항

제8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부표2] 특정질병분류표

[부표3] 재해분류표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또는 특약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해 당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1. 해당계약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 2.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피보험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인(3인, 多인) 보장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이 특약을 2인(3인, 多인)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3. 면책기간 : 이 특약에 따라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4. 특정신체부위 : <부표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 위를 말합니다.
- 5. 특정질병 : <부표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6. 재해 : <부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관 면책(보장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제3조 면책(보장제한) 조건의 내용

- ①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특정신체 부위 보장제한형)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하며, 2종(특정신체 부위 및 특정질병 보장제한형)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 2. 특정질병
-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1년부터 5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면책기간 설정에 대한 판단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심사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기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등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자동 갱신계약의 경우 면책기간 산정

- 이 특약을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 (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는 경우 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

- 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4.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 (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제4항 제4호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⑥ 제4항 제4호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⑧ 제7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 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 ① 제2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합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는 주계약에 부가하는 경우

이 특약을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는 주계약에 부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합병증

어떠한 질환에 관련하여 생긴 다른 질환

전이

병원체 또는 종양세포 등이 기관이나 조직의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 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착 및 증식 하는 상태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특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해당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등으로 회사가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이 특약을 부가하여 "해당계약"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을 포 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준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입증된 경우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